

의안번호	제 4 호
의결년월일	1998. 7. 10
의결사항	원안가결

발의자	박홍식 의장외 3인
제출 년월일	1998. 7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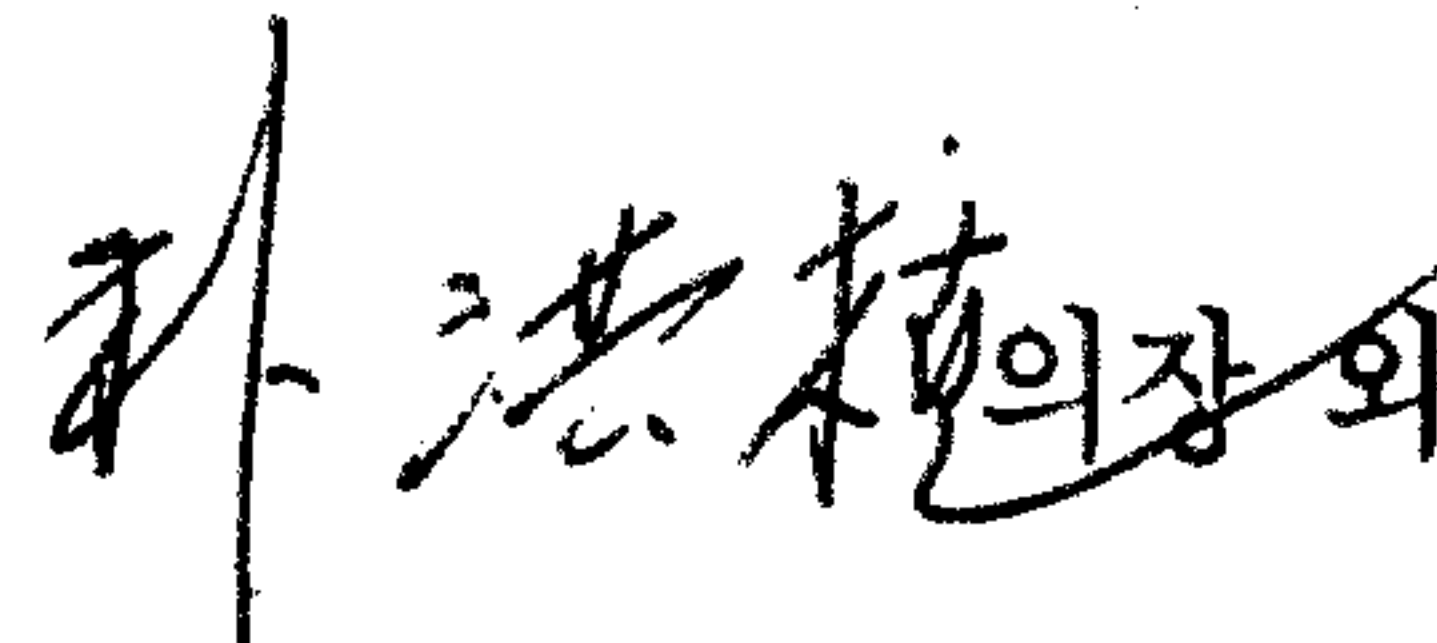
97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

수신 의 장

제목 97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

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내지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지방자치법
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97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부. 끝.

발의자: 의장외 3인

(찬성의원서명: 붙임 참조)

97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

제출 년 월 일 : 1998. 7월 9 일

의 안 번 호	4
------------	---

제 안 자 : 박홍식 의장 외 3인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.제47조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회계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보은군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본 건을 제안합니다.
- 추천된 3인의 위원은 별지 명단과 같습니다.

☐ 붙임 : 보은군결산검사위원 추천서 1부.

보은군결산검사위원 추천서

구 분	소 속	직 책	성 명	주민등록 번 호	주 소
대표위원	보은군 의 회	의 원	조강천	570101- 1382613	삼승면 서원리 310-1
위 원		전의원	방창우	290501- 1383014	내북면 창리 55-6
		〃	이근재	340809- 1383118	산외면 탁주리 191-9

의안찬성의원서명

성명	서명	(인)
이정호	이정호	
이영준	이영준	
이재현	이재현	